

[ ] 종자업  
[ ] 육묘업      등록증 재발급신청서

(앞쪽)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접수일 | 처리기간    7일                |
| 신청인    | 성 명 (대표자)                  |     | 생년월일 및 국적(외국인의 경우)        |
|        | 법인 명칭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건의 표시 | [ ]종자업      등록번호<br>[ ]육묘업 |     | [ ]종자업      등록일<br>[ ]육묘업 |
| 신청사유   | 재발급 신청사유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사유가 발생한 날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「종자산업법 시행규칙」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 
특별자치도지사      귀하  
시장·군수·구청장

|      |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|-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없음 | 수수료<br>없 음 |
|------|----|------------|

작성방법

- 1. 해당되는 각 [ ]란에 V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- 2. "재발급 신청사유"란에는 종자업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림 또는 종자업 또는 육묘업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됨 등과 같은 재발급사유를 적어야 합니다.
- 3.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